

## ● 진료비 감면 지침

제정 2011. 6. 13. 지침 제88호 개정 2012. 7. 23. 지침 제98호  
개정 2012.12. 14. 지침 제119호 개정 2013. 5. 2. 지침 제124호  
개정 2014. 4. 18. 지침 제140호 개정 2017. 1. 3. 지침 제203호  
개정 2019.12. 23. 지침 제256호 개정 2020.09. 15. 지침 제274호  
개정 2021.12. 17. 지침 제296호 개정 2021.12. 31. 지침 제297호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의료원이 진료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료사회사업 등 특수한 목적과 직원후생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료비 감면에 대하여 타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라 함은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2. “배우자”라 함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직계존속”이라 함은 부모 또는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하며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2020.09.15 지침 제274호)
4. “직계비속”이라 함은 자녀에 한하며 기혼자녀는 제외한다.

제4조(진료비 감면의 대상과 범위) ① 진료비 감면의 대상과 범위는 <별표1>의 진료비 감면기준표에 의한다.<개정 2012. 7. 23 지침 98호, 2012. 12. 14 지침 119호, 2013. 5. 2 지침 124호, 2014. 4. 18 지침 140호, 2017. 1. 3 지침 203호, 2019.12.23 지침 제 256호>

② 제1항 이외의 진료비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감면범위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직원의 정기건강진단 및 업무상 필요한 예방접종
2. 직원으로서 업무상 재해환자(공상환자)
3. 의료원운영 및 사회사업과 관련하여 기관단체와 체결하는 진료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환자
4. 의료원운영에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삭 제<개정 2014. 4. 18 지침 140호>

제5조(진료비 감면의 비용부담) ① 진료비 감면액은 진료를 제공한 의료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진료비 감면액은 의료수익 조정계정으로 처리한다.

제6조(진료비 감면 제외 상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는 진료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2. 자해 행위에 의한 상병
3. 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이 보상되는 진료
4. 기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7조(진료인정기간) 진료비 감면 진료인정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준용한다.

제8조(관계서류제출) ① 진료비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비 감면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진료비 감면 대상확인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2. 건강보험증
3. 환자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사본
4. 직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전 각 호 이외의 사항으로 병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② 진료비 감면대상 여부가 분명하거나 확정된 자로서 별도로 진료비 감면대상 여부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제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진료비의 납부) 진료비 감면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진료비는 병원이 정한 진료비 납부 절차에 따라 일시에 진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주관부서) 진료비 감면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무과에서 관리한다.

제11조(사후관리) 원무과장은(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진료비 감면 신

청서 또는 진료비 감면 대상 확인 신고서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6. 13. 지침 88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포 이전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개정 2012. 7. 23 지침 98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2. 14 지침 119호>

이 지침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5. 2 지침 124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4. 18 지침 140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1. 3 지침 20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공포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9.12.23 지침 256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9. 9. 1 이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09.15 지침 274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12.17 지침 296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0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12.31 지침 297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01.01.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9.12.23. 지침256호>

<개정 2021.12.17. 지침296호>

<개정 2021.12.31. 지침297호>

## 진료비 감면기준표

(단위 : %)

구 분	대 상	외 래			입 원		보철 교정	임플 란트
		진찰료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보험급여	비보험	보험급여	비보험		
부산의료원 임직원	본인	50	50	50	50	50	25	30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부모	50	50	50	50	50	25	30
부산노인전문제24병원 임직원	본인	50	50	50	50	50	20	10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부모	50	50	30	50	30	20	10
부산의료원 용역업체직원	본인	20	20	20	20	20	0	0
부산의료원 공익근무요원	본인	20	20	20	20	20	0	0
부산의료원 근무 20년 이상 근속퇴직자(명예퇴직자 포함)	본인	40	40	40	30	30	0	0
협약에 의한 단체직원		별도 협약사항에 따른 감면 적용						
<p><b>※ 적용시 유의사항</b></p> <p>1.비보험 적용범위 : 상급병실료 차액, C.T 및 M.R.I의 촬영료, 심초음파 촬영료, 초음파 촬영료에 한함(비급여약제 및 진료재료비 등은 감면 품목에서 제외)</p> <p>2.감면대상 여부확인은 입증서류에 근거하여 감면정보를 전산관리 진료비감면신청서, 확인증명서에 의함</p> <p>3.부산의료원 근무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중 의료원에 인적·물적 손해를 끼치거나 의료원의 이미지를 훼손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면폭을 제한할 수 있음.</p>								

## 종합검진비 감면기준표

구 분	대 상	감 면 범 위
부산의료원 임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부모	종합검진비 총액 (기본종합검진 + 선택건강검진) 의 30% 감면





【별지 제3호 서식】

## 입원 진료비 감면 현황

[20   년   월분]

창구담당자 :  
(금액단위 : 원)

구 분	건수	진 료 비			감면액	비 고
		계	조합부담금	본인부담금		
계						
임 직원						
직 계						
직원추천						
협약기관						
무료시술						
기 타						

붙임 입원진료비 감면 내역 1부.

20   년   월   일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행정처장	원 장

【별지 제4호 서식】

## 외래 진료비 감면 현황

[20   년   월분]

창구담당자 :  
(금액단위:원)

구 분	건수	진 료 비			감면액	비 고
		계	조합부담금	본인부담금		
계						
임 직 원						
직 계						
협약기관						
무료시술						
기 타						

붙임 외래진료비 감면 내역 1부.

20   년   월   일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행정처장	원 장